

강진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

#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

-2023. 1. 1. 시행-





## **'고향사랑 기부제'란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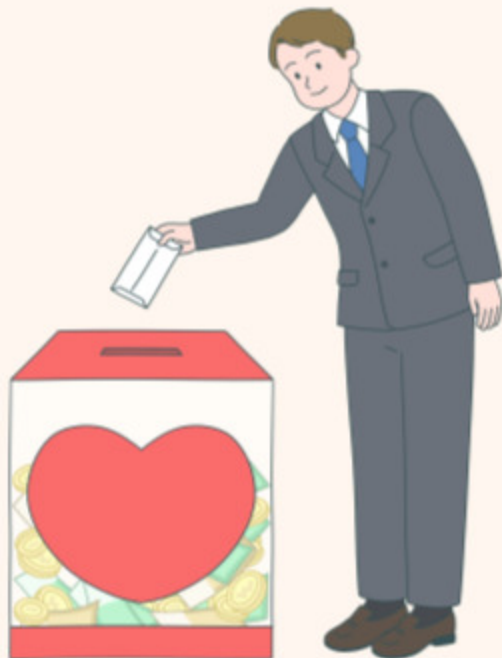
**개인이 거주지 외 고향(강진군)에  
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 
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 
제공하는 제도입니다.**

# 2023. 1. 1. 시행

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(2021. 10. 19.)

---

- 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자체(강진)에 기부 ※법인은 불가
- ✔ 답례품 제공(기부액의 30% 이내)  
- 지역특산물, 강진사랑상품권 등
- ✔ 세액공제 혜택  
- 10만원 이하 전액, 초과 시 16.5%



##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?

- ✔ **강진 발전의 동력으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!**
  - 복지, 문화, 예술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
- ✔ **답례품 활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.**
  -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확대